

##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209-0788692
신청일	2022-09-24 02:55:41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정치하는엄마들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 민원 신청 내용

제목	경기도교육청의 2018~2021년 학교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그 처리 현황 정보 비공개를 소극행정으로 신고합니다
내용	지난 6월 19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활동 취지인 여성인권과 아동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2018-2021년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는 교육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학교성폭력 고발이 있었던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정치하는엄마들의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행정관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일상적인 감시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2018년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 중 15개 교육청이 비공개로 처분했고, 2019년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학교명'을 비공개했고, 2021년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4월 승소했습니다.

1차 행정소송의 1심·2심 판결문과, 2차 행정소송의 1심 판결문은 학교성폭력 사건의 처리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022년 5월에 '2018~2021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에 관해 정보공개 청구할 때 해당 판결문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7월 13일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회신하며 정보 공개 요청 사항 '학교명'과 '경력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조를 들어 '비공개' 하여 사건발생 학교명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첨부 6> 즉 경기도교육청은 사법부의 판단을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학교성폭력이 발생한 '학교명'을 은폐했고, 이로써 가해 교사는 보호받고 피해 학생은 위험에 노출되고

방치됐습니다.

학교성폭력이 일어난 학교의 명칭은 불법사실에 대한 가장 주요한 정보로서 학부모 및 학생들이 피고의 감사 및 시정조치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응시켜서 실생활 즉 '내가 이 학교를 다녀도 괜찮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정보입니다. 학생의 행복추구권,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정보인 학교명이 빠진 채 일부 공개된 정보들은 아무런 효용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정보 공개 요청 사항인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직위 해제 여부, 감사 실시여부, 장학파견 여부, 퇴직여부, 경찰고발여부, 피해 학생 지원 여부 등에 상당 부분을 '부존재'로 답변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기 정보들은 학부모들과 학생 당사자들에게는 어떠한 효용도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다수 익명의 학교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어떤 학교인지 알 수 없으니 교육주권자 또는 피교육자들로서는 공포만 더 심화됩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의 이와 같은 방식의 정보 공개는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범죄에 노출되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불안함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위반됩니다.

사건발생 학교명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일 뿐 보호법익이 있는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위 정보를 보호했을 때 불법행위자 소수가 얻을 이익보다, 국민이 입을 불이익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위 정보는 응당 공개되어야 합니다. 즉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로서의 형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 내지 다.목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공개해야할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 내지 다.목>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송을 두 차례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여 정보 공개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1차 1심(2020년 3월 5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252)과 2심(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2020누38166)과 2차 소송(2022년 4월 29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241)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첨부 1>, <첨부 2>, <첨부 3>

재판부는 가해교사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나머지 정보를 통하여 피고의 특별감사의 시행에 따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나머지 정보는 헌법상 알권리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첨부 1> 6쪽

"이 사건 나머지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가해교사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정보 중 가해교사의 성명 부분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원고의 알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은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1> 6쪽

"이 사건 정보 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은 제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고, 그 조치를 위한 업무처리의 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의 이익을 비교해 볼 때, 인사업무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비공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업무의 처리결과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비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첨부2> 3-4쪽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전제가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학교명 공개만으로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 성폭력 후속조치에 필요한 공익 정보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4조, 제17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촉진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첨부 3> 5, 6쪽

"나아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였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첨부 3> 8쪽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러한 선행 판결문들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이와 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한 광주시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의 사례를 첨부합니다. <첨부4>, <첨부5>

이와 비교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사건발생 학교명이 막연히 개인정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제2, 제3의 학교성폭력 사태가 일어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불성실한 정보공개 행태는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며, 해당 부서가 알 수 없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정보 부존재로 일관하며 아동청소년들의 교육복지를 저해하며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 해태 행위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합니다.

첨부1. 판결문(서울지방법원\_2019구합65252\_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 3. 5)

첨부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 12. 11)

첨부3. 판결문(서울행정법원의 2021구합66241 정보공개처부처분취소 2022. 4. 29)

첨부4. 2018-2021 학교 성폭력 처리 현황 정보공개청구\_광주시교육청(공개)

첨부5. 2018-2021 학교 성폭력 처리 현황 정보공개청구\_울산시교육청(공개)

첨부6. 2018-2021 학교 성폭력 처리 현황 정보공개청구\_경기도교육청(부분공개)\_학교명비공개

#### 첨부 파일

첨부1\_2\_3\_판결문.zip 첨부4\_2018\_2021\_학교\_성폭력\_처리\_현황\_정보공개청구\_광주시교육청\_답변공개.zip 첨부5\_2018\_2021\_학교\_성폭력\_처리\_현황\_정보공개청구\_울산시교육청\_답변공개.zip 첨부6\_2018\_2021\_학교\_성폭력\_처리\_현황\_정보공개청구\_경기도교육청\_답변(부분공개)\_학교명비공개.zip

##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학생생활교육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9-0829924
접수일	2022-09-26 09:53:59
담당자(연락처)	김소라 (02-820-0768)
처리에정일	2022-10-05 23:59:59

## 답변 내용

통지일	2022-10-05 16:16:42
처리결과 (답변내용)	<p>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소극 행정 민원'에 대해 신청하신 민원(1AA-2209-078869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p> <p>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교명 비공개 사유는 2020년 3월 스쿨미투 관련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학교명 비공개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이후 들어온 동일 요청 건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답변 동일하게 답변을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p> <p>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김소라 주무관(☎ 031-820-07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민원 처리 업무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시어 민원 처리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 첨부 파일